비조치의견서 (☑비조치 □조치 □기타)

	담당 부서	IT검사국	담당자 (직위, 성명)	김진원 선임	연락처	02-3145-7429
요청대상 행위	□ 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제15조제1항제5호가목*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 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연구·개발 목적의 정보처리시스템과 이를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 IT직원이 재택 등 외부에서 전용회선과 동등한 보안수준을 갖춘 통신망(전용회선,VPN 등)을 이용하여 원격접속이 가능한지 * 제15조(해킹 등 방지대책)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·운용하여야 한다. 5.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, 개발, 보안 목적 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할 것.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가.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연구·개발 목적의 경우 (단,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자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를 적용한 경우에 한한다.)					
판단	□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					
판단이유	□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제15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연구·개발망에 대해서는 IT직원이 외부에서 연구·개발망으로의 상시 원격 접속이 가능합니다.					
	~ ~					, <별표7>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시기

※ **비조치의견서의 효력**(「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」 제6조의2, 제11조제1항· 제2항 참조)

- 1.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.
- 2.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- 가.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
- 나.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
- 다.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
- 라.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
- 마.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,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
- 3.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의 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 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